

[] 안전인증대상기계등 제조업체

[]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 제조업체

[] 산업재해다발 기계·기구 및 설비등제조업체

[] 국소배기장치 및 전체환기장치 시설업체

[] 소음·진동 방지장치 시설업체

[] 등록

[] 변경

신청서

※ []에는 해당되는 곳에 √ 표시를 합니다.

접수번호	접수일자	처리일자	처리기간	30일
신청인	업체명(상호)			
	대표자 성명			
	전화번호	사무실 면적(㎡)		
	소재지			

등록 또는 변경 내용

「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」 제138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[] 등록 [] 변경하고자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

(서명 또는 인)

등록지원기관의 장 귀하

신청인 제출서류	1. 「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」 별표 17에 따른 인력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격과 채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격증(국가기술자격증은 제외합니다), 졸업증명서, 경력증명서 및 재직증명서 등의 서류 2. 건물임대차계약서 사본이나 그 밖의 사무실의 보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시설·장비 명세서 각 1부 3. 제조 인력, 주요 부품 및 완제품 조립·생산용 시설 및 자체 품질관리시스템 운영에 관한 서류(국소배기장치 및 전체환기장치 시설업체, 소음·진동 방지장치 시설업체의 경우는 제외합니다)	수수료 없음
담당 직원 확인사항	1. 법인인 경우: 법인등기사항증명서 2. 개인인 경우: 사업자등록증명(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합니다) 3. 「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」 별표 17에 따른 인력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국가기술자격증	

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

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직원이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직원 확인사항 제2호 및 제3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 *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.

신청인

(서명 또는 인)

공지사항

본 민원의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 및 관련 제도 개선에 필요한 의견조사를 위해 귀하의 전화번호(휴대전화)로 전화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.

210mm×297mm(일반용지 60g/㎡(재활용품))